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조건과 L...

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조건과 LPG·고속도로 할인 연계

루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쓰는 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차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다른 혜택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쓰는 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차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다른 혜택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행정안전부, 최종수정 2026.04.30)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최종수정 2026.10.06)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기본 정보

항목	내용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용도	보철용·생업활동용
면제	취득세와 자동차세 각각 2027.12.31까지
수량	먼저 감면 신청한 차량 1대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 방문
문의	지방세 one call 1577-5700

2. 감면되는 차량 종류

-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전기·수소차 등 구체적 적용 여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3. 명의 조건

-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예요.
- 취득세·자동차세 중 한 세목을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한해요.
- 다른 감면 규정과 겹치면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돼요.

4. 신청 순서

- 차량 구입 전 장애 정도와 명의 구성을 확인해요.
- 취득 후 시·군·구청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그 밖의 구비서류와 기한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공식 확인**하세요.

- 지방세 납부·조회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해요. 감면 신청 자체를 온라인으로 받는지는 지자체에 **공식 확인**하세요.
- 면제 후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바꿀 때 감면분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추정 요건은 법령과 세무과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5 5. 연계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등록장애인이 탄 경우예요.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하고 경차와 영업용(노란 번호판)은 제외돼요. 통합복지카드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 **LPG 연료 사용 허용**: 보건복지부 세제혜택 목록에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이 있어요. 대상 차종과 신청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식 확인**하세요.
- **개별소비세 면제**: 500만원 한도이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잔존연도분이 부과돼요. 지방세와 별개로 세무서 소관이에요.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로 안내돼요.

6 6. 자주 하는 실수

- 감면 신청 전에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예요.
- 통행료 할인 차종 기준과 지방세 감면 차종 기준이 다른데(6~10인승 대 7~10인승) 같다고 보는 경우예요.
- 장애인과 세대가 달라 공동명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예요.
- 경차는 통행료 할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예요.

7 7. 가상 예시

G씨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같은 세대의 자녀 H씨와 공동명의로 2,000cc 이하 승용차를 등록한다고 해요.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을 하고, 별도로 읍·면·동에서 통합복지카드로 통행료 할인을 신청하는 흐름이에요.

8 체크리스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차종과 배기량·정원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했다
- 명의 요건(본인 또는 같은 세대 공동명의)을 확인했다

-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냈다
- 통행료·LPG 등 연계 혜택을 따로 신청했다

9 용어 정리

- **보철용**: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용도로 쓰는 것이예요.
- **생업활동용**: 장애인이 생업에 쓰는 용도예요.
- **추징**: 감면받은 세금을 조건 위반 시 다시 걷는 것이예요.
- **통합복지카드**: 통행료 할인 등에 쓰는 장애인 복지카드예요.

10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정부24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0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04>)
- 보건복지부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통행료 등):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500>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500>)
- 보건복지부 장애인 세제혜택(LPG·개별소비세 등):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600>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600>)
- 위택스(지방세 포털): <https://www.wetax.go.kr> (<https://www.wetax.go.kr>)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11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